

2024년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지원사업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

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(창업 3년 이내)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『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지원사업』의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4년 01월 25일
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

1. 모집개요

① **(사업목적)**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창업초기(3년 이내) 청년창업자(기업)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

② **(모집지역)** 전국 8개 지역 8개소 (1개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)

모집 지역 (입교자 정원)	서울 (115명)	인천 (35명)	강원(원주) (30명)	세종 (30명)
모집 지역 (입교자 정원)	전북(전주) (40명)	전남(나주) (35명)	대구 (40명)	울산 (30명)

③ **(운영사 역할)**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의 창업교육·코칭, 사업화 지원, 네트워킹, 기타(기관특화) 프로그램 등

○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*

* 사업비 예산지원(2023년 기준) :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800만원 내외

④ **(위탁기간)** 최대 3년까지 운영

○ 최종 선정된 운영사에 대해 1년의 운영기간 부여 후, 매년 성과 평가(중간 및 최종)로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 1년 단위로 연장

2. 신청 자격

- ① **(신청대상)** 창업초기(3년 미만) 청년창업자(기업)의 창업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, 대학, 공공기관 등
- **(민간기업(단체))** 기술사업화 전문회사* 등 민간기업 및 협회·단체
 - * 기술지주회사[산학협력법], 신기술창업전문회사[벤처기업법],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[벤처투자법] 등
 - 민간기업(단체)의 경우 신용평가등급, 등급의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**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**
 - 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
 - **(대학)** “고등교육법 제2조”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“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”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
 - **(공공기관)** 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”의 각 호에 해당되는 기관, 지자체 출자·출연 기관 등

※ (공통사항: 컨소시엄 불가)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가능

- ② **(신청제한)**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(징수유예 포함)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”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(기업)
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- 교육부의 “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”에 해당하는 대학
- 중소기업부 등 정부 부처,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(기업)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(기업)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3. 지원 요건

- ① **(지원 프로그램)**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에 대한 창업 교육·코칭, 사업화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
- ② **(전담조직)**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에 대한 창업사업화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조건 충족 여부
 - (구성) 사업관리자(PM) 1명,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전담 코칭인력*으로 구성
 - * 코칭인력(참여율 100%기준) 1인당 담당 입교자수 : 최소 10명~최대 15명
 - (조건) 사업관리자(PM)는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여야 하며, 사업관리자(PM)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%이어야 함
 - 코칭인력: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참여율 50%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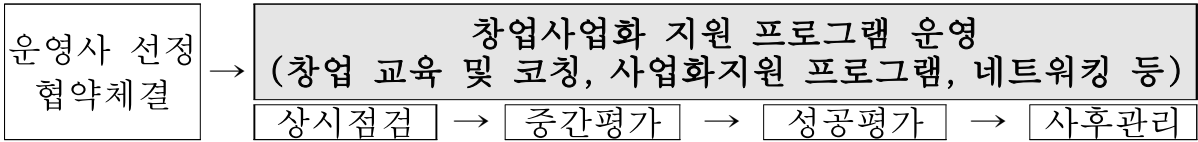
<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(예시) >

청년창업사관학교 (민간운영사 전담조직)		
창업교육 및 코칭	사업화 지원 프로그램	네트워킹 프로그램
·운영사 및 지역 특화 교육 ·S-CoP(문제해결형 워크숍) ·특화 코칭 운영 등	·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·거래처 발굴 및 매출 증대 ·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	·입교·졸업기업 동문 ·유관기관 교류 ·자체 네트워킹 등

4.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

<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체계 >

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지원



② 특화프로그램 지원

- 운영사의 강점 및 특화역량, 지역 특화산업,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1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

① 입교자 대상 창업 교육 및 코칭

- 운영사 강점분야 특화 교육
- S-Cop(분과 모임) 등 운영
- 특화 코칭 운영 등

- 운영사 강점분야 특화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과정개발
 - 운영사별 강점분야(신산업 등)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편성(20시간 내외)
 - * 창업기본(기업가정신, 인사, 재무, 노무 등 경영실무) 교육은 별도 운영
- S-CoP(Startup Community of Practice)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
 - 입교자가 주도하는 참여형 지식공동체로 입교자 모임, 선·후배, 외부전문가 S-CoP(노하우 전수) 등 분과모임 활성화
 - * 분야별 월 2회 이상,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
- 입교자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(주 1회 이상)
 - 입교자별 전담 코칭인력을 배정하여 입교기간 중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성 검증, 제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소과정 코칭

○ **특화코칭 운영**

- 창업 유경험자 및 현업 종사자 등 외부전문가의 특화분야별(세무 회계, 디자인, 투자 등) 코칭(월 4회 이상)

*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(4~5명 수준) 맞춤 코칭으로 수행

②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

-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
- 목표시장 진출전략 수립,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
-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

○ **비즈니스모델(BM) 고도화 및 제품개선**

- 입교자의 현재 BM, 진행중인 기술개발 및 특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, 중장기 BM 및 제품 고도화 전략 수립·지원

○ **목표시장 진출 전략 수립,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 지원 등**

- 입교자의 아이টে에 적합한 목표 시장 설정, 진출전략,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을 통한 매출, 고용, 수출 성과관리, 증대방안 마련

* 운영사별 KPI(매출, 고용 등) 협의, 확정 후, KPI 달성률에 대한 월별 점검과 더불어, 운영사 성과평가(중간 및 최종)시 반영 예정

○ **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**

-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전략, IR 피칭, 멘토링을 통한 투자역량 강화,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, 민·관 창업사업 연계지원 등

* '24년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시 지역별 입교자 4명 이상 추천

③ 입교자 네트워킹 프로그램

- 입교·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
- 지역 창업생태계 협업 노력 및 성과창출
-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

○ **입교자와 졸업기업간 동문 네트워킹**

-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동문 모임 상시 추진을 통한 네트워킹 활성화

○ 지역 창업생태계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

- 지역 창업유관기관(창·경혁신센터, TP, 대학, 연구기관 등) 및 국내외 민간(VC, VC 등)과 협력방안 제시 및 연계지원 성과창출

○ 자체 기획 네트워킹 운영

-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입교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실제매출 발생과 관련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기획, 구성하여 운영

* (예시) ①분야별(기술별, 업종별, 단계별 등), ②입교자-중소·중견기업 간 개방형 혁신(오픈이노베이션), ③글로벌 VC·AC 및 스타트업 연계 등

②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에 평가업무

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(매월)

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,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(최종)평가

*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

③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

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

- 입교자 코칭 및 네트워크 등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 체계를 참고하여 집행
-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별도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, 사업종료 후 사업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
-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

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

-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, 분류, 보관 및 보안 관리
-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 제시
-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① (신청기간) 2024.1.25.(목) 09:00 ~ 2024.2.7.(수) 12:00

② 신청방법

- K-스타트업 홈페이지(www.k-startup.go.kr)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(kosme-21@kosmes.or.kr)
- (제출서류) 신청공문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증빙자료,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각 1부
 - * 신청공문,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
 - *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(필요시 소명자료 요청할 수 있음)

5.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

① 선정평가 절차

- ① 서류평가 → ② 발표평가 → ③ 현장확인(필요시) → ④ 사업운영 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

※ 서류평가 점수 40%, 발표평가 점수 60%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

- (서류평가)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,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,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

*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~ 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

**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% 미만(24점 미만)인 경우 탈락 처리

- (발표평가)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대면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의지, 프로그램 계획, 수행역량,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

* 총괄책임자(대표이사 혹은 임원급 이상)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, 질의응답 10분

- (현장확인)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가능

* 현장확인 결과, 사업계획서 상 과장 및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

- (사업운영위원회) 서류·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·선정

* 심의결과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

< 선정평가 운영절차(안) >

평가단계	평가 내용
서류평가 (40%)	•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(2~4배수 내외 추천)
↓	
발표평가 (60%)	•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
↓	
현장확인 (필요시)	•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
↓	
사업운영위원회	• 운영사 심의·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
↓	
최종선정	• 선정공고

2 추진일정

신청접수	▶	서류평가	▶	발표평가	▶	사업운영 위원회	▶	선정공고
1.25.~2.7.		2.14.~2.15.		2.21.~2.22.		2.28.(예정)		2.29.(예정)

*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6. 유의사항

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
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
-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, 신청접수기한(2024.2.7.(수) 12:00)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, 이후에는 일체 수정불가
-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 - *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

7. 문의 및 접수처

1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: 055-751-9834, 055-751-9856

2 접수처

- 이메일 제출: kosme-21@kosmes.or.kr

- 【붙임】**
1.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
 2. 창업성공패키지(청년창업사관학교)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